

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7. 7. 7 (금) 14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9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 연, 김연진, 김영원, 김영진, 김정연,
이혜경, 오상욱, 양찬제, 박민정, 이은형
- ◆ 안 건 : 5건 9작품 (회화 4점, 조각 3점, 부조 2점)
- ◆ 결 과 : 승인 3작품, 부결 6작품
- ◆ 회의록 확인 : (서명), (서명)

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금일 심사위원 10명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.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 거수로 개별 채점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- 1번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한 건물에 1-1~1-4까지 작품이 있는 것인가요? 그렇다면 흐름에 맞추어 작품을 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.
- 8페이지 보면 작품 1-3~4번이 지하주차장에 있는데, 이곳에 작품이 굳이 2개가 있어야만 하는 의문이 듭니다.
- 주차장이 연결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나요?
- 1-3번 작품의 경우 가격 면에서 좀 고액이라고 판단됩니다.
- 4개를 일괄적으로 보고 의견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작품 가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
- 작가의 지명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보니, 조각 같은 경우보다도 회화작품은 작품가액을 판단하기 힘듭니다.
-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, 작가경력 등 고려해봤을 때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. 회화 재료도 아크릴인데, 이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은 고액이라고 생각됩니다.
- 덧붙이자면 67페이지를 보면 크기가 2미터 70인데, 시공방법의 경우 마치 집에 거울을 거는 듯이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
- 작품의 심의가 사용승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여 채점을 하긴 하지만, 1번 작품들의 경우 채점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. 예술이라는 것이 주관적이지만, 채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
- 2-1번과 2-2번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작품가액이 고액인 것 같습니다.
- 한마디 하자면, 설치금액 사용 계획서를 보면 행정비용이 1천2백이 나온 것이 있는데, 마치 가격에 짜맞추어 금액을 기재한 것

같은 느낌이 듭니다.

- 점수는 각 위원님들이 하셔야하는 사항이니, 잘 생각하셔서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.
- 특히 이번 안건들은 작가 경력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.
- 2번째 작품도 가격이 의심스럽습니다. 대략 40~50% 더 많이 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.
- 2-1, 2-2번이 같은 작가인가요?
- 네. 같은 작가입니다.
- 저는 가격에 대해서 주관적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, 건축물과의 조화성, 조형성 등을 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
- 보통 작품을 보면 시장가격이 있는데, 가격을 본다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.
- 객관적으로 보면 2번작품의 경우 회화사이즈를 구분하다고해도 1번의 겨우 500호가 넘고 2번의 경우도 1000호가 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가격에 대한 문제보다는 위치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시장가격으로도 이작가의 작품을 보면 비싸다고 생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.
-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
- 하나는 로비 위에 걸리고, 하나는 벽면에 걸리는 작품입니다.
- 하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?
- 설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 같습니다. 포토샵으로 출력을 하고나서 아크릴을 입히고, 못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.

- 안정성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
- 2번 작품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없으시면 3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진 경찰서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.
- 현재까지도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30년 전 기념 상패를 보는 느낌입니다. 오늘 안전 상정된 작품들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조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이 작품도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
- 1970~80년대 작품이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 시절에 볼 수 있는 작품 같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?
- 3번 작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없으시면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4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가점을 거수에 따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.
- 4작품 중에 1작품을 선정했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 가점을 받기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
- 저는 이 건축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서, 공모로써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
- 가산점 부여여부에 대해 거수를 통해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재심의 도서 표지를 보면 심의 부결 사유가 건축물과의 부조화였는데, 건물 이름이 돌고래와 관련이 있다라던지 지역에 돌고래가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작품의 개별적인 창의성을 인정하긴 하는데, 작가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있는 작품

이 아니라 작가의 경력을 보면 이 조형물을 위한 돌고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 건물에 왜 돌고래 조각인지 상징성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.

- 도시에 돌고래가 있다고 보면 휴식차원으로 나름 생각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.
- 작품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
- 추후 심의 시 건축주의 요청사항이 심의도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
- 그러면 5번 작품을 보겠습니다. 추가로 이 작품은 보는 위치에 따라 색이 변하는 작품입니다. 도료샘플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- 디자인 벤치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, 과연 이게 디자인 벤치의문입니다. 높이도 250~400까지 있는데, 이게 디딤돌이지 벤치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이 작가분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
-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에서 어른까지 높이차를 두어야하니, 이런 의도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그라데이션 있는 색감의 조형물인데, 타일도 색감이 요란해서 어지러운 느낌이 듭니다.
- 벤치의 경우 스테인리스 이다보니 주변의 색을 다 투영해서 작품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또,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차가워서 벤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
- 그럼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채점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추가로 1번작품의 경우 도서에 나온 그래픽처럼 나올지 의문스럽

습니다. 특히 1번 작품의 경우 누구나 다 만질 수 있는 작품이라서 안정성이 조금 걱정됩니다. 1-3번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의도하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. 낮은 천장의 구조로 볼 때 그래픽작업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70페이지의 근경, 71페이지의 원경을 보면 이 거리에서 해경을 볼 수 있는 풍경작품을 이곳에 건다는 것이, 장소성과 안정성에서 걱정이 됩니다. 가격에 대한 것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

- 1-1번과 1-2번은 3층이고 나머지 1-3번과 1-4번 작품은 지하인데, 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또한 재질이 도자라서 오염이 될 것 같습니다.
- 건물의 유지보수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
- 1번 4개의 작품은 시공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듯 하고, 조명도 공통된 방향으로 시공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-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? 없으시다면 작품별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9개 작품 중 1-1~4번, 3번, 4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7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